

21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 월 2 일

여 수 시 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여수  
시장  
인

여수시 조례 제1734호

붙임 여수시 행정정보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 여수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 “여수시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여수시 정보공개 조례”로 한다.

제1조 “이 조례는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의 시정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시정의 공정한 집행을 통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여수시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여수시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시민의 공개 청구 및 시장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제1항 “집행기관이”를 “여수시가”로, 제1항 및 제2항 “행정정보”를 “정보”로 한다.

제4조 “집행기관의 의무”를 “시장의 책무”로 하고, 제1항 “집행기관은 행정정보를”을 “시장은 정보를”로 하며, 제1항 및 제2항 “행정정보”를 “정보”로 하며, 제2항 및 제3항 “집행기관”을 “시장”으로 한다.

제5조 중 “행정정보의 공표”를 “정보의 사전적 공개”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 “집행기관”을 “시장”으로 “각 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행정정보”를 “정보”로 “의하여”를 “따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제1항 “범위, 공개주기 · 시기 및 공개방법 등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를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항 7호 “5천만원이상의”를 “5천만원 이상의”로 “300만원이상의”를 “300만원 이상의”로, 8호 “설계변경시”를 “설계변경 시”로 9호 “300백만원이상”을 “300만원 이상”으로 “1천만원이상”을 “1천만원 이상”으로 하며, 제3항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며, “행정정보”를 “정보”로 한다.

제6조제1항 “집행기관에”를 “시장은”으로 한다.

제7조 중 “행정정보”를 “정보”로 하고, “범위안에서”를 “범위 안에서”로 하며,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고, “여수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하며,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8조 1호 중 “집행기관의 장”을 “시장”으로 하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3호 “기타 행정정보공개제도의”를 “그밖의 정보공개제도의”로 하며, “집행기관의 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심의회는 위원과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행정지원국장, 공개대상업무 담당국·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의회 의원 2인, 학계 등 정보공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제1항 “심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호 “여수시 부시장, 정보공개업무 담당 국장” 2호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여수시의회 의원 1명”, 나.“학계 등 정보공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며, 제2항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인을 두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를 제3항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 “시의회”를 “여수시의회”로 하며, “소속공무원중에서”를 “소속 공무원 중에서”로 “의 규정에”를 “에도”로 “의회의원”을 “여수시의회 의원”으로 “임기내로”를 “임기 내로”로, “재직중인”을 “재직 중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집행기관의 장”을 “시장”으로 하며, 제3항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1인”을 “1명”으로 하고, 제2항 “민원행정담당”을 “정보공개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4조 “때”를 “경우”로 하고,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등으로부터”를 “등의”로 한다.

제15조 “아니되며”를 “안되며”로 한다.

제16조 제1항 “작성 비치”를 “작성 · 비치”로 한다.

제17조 “각호”를 “각 호”로 하고, 제1호 “때”를 “경우”로 하며, 제2호 ‘할 때’를 “되는 경우”로 한다.

제18조 “시소속”을 “시 소속”으로 하며, “범위안에서”를 “범위 안에서”로 한다.

제19조 “평가 및 보고 등”을 “평가 등”으로 하며, “집행기관의 장”을 “시장”으로 하고, 제2항 “시장은 집행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매년 발간하여 공개한다.”를 삭제한다.

제20조 제1항 “조례에 의하여”를 “다른 조례에 따라”로 “아니하다”를 “않는다”로 하며, 제2항 “집행기관이”를 “여수시의”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여수시 행정정보공개 조례</b></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의 시정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시정의 공정한 집행을 통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여수시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집행기관”이라 함은 여수시 및 여수시 소속 행정기관, 여수시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을 말한다.</li> <li>“청구인”이라 함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기관·단체를 말한다.</li> <li>“정보”라 함은 여수시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li> <li>“위탁기관”이라 함은 여수시조례 등에 의하여 사무 및 시설물 등에 대한 여수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사무 및 시설물 등에 대하여 수탁 운영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li> </ol>	<p><b>여수시 정보공개 조례</b></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여수시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시민의 공개 청구 및 시장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lt;삭 제&gt;</p>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u>집행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는 소중한 공공자산으로서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u></p> <p>②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민의 청구 없이도 주요 문서 등의 사전 공개대상 <u>행정정보</u>를 확대한다.</p> <p>③ ~ ④ (생략)</p> <p>제4조(집행기관의 의무) ① <u>집행기관은 행정정보를 시민이 신속·정확하고 용이하게 얻을 수 있도록 공개대상 행정정보를 확대하고 행정정보의 공개·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p> <p>② <u>집행기관은 주요 공개대상 목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행정정보 공개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u></p> <p>③ <u>집행기관의 장은 정보공개의 확대와 소통 증대를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한다.</u></p> <p>제5조(<u>행정정보의 공표</u>) ① <u>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주기·시기 및 공개 방법 등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u></p>	<p>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u>여수시가</u> ----- <u>정보는</u> ----- ----- -----.</p> <p>② ----- ----- ----- <u>정보</u>-----.</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4조(<u>시장의 책무</u>) ① <u>시장은 정보를</u> ----- ----- <u>정보</u> ----- <u>정보</u>----- ----- -----.</p> <p>② <u>시장</u>----- ----- <u>정보</u>----- ----- -----.</p> <p>③ <u>시장은</u> ----- ----- -----.</p> <p>제5조(<u>정보의 사전적 공개</u>) ① <u>시장은</u> ----- <u>어느 하나에</u> ----- <u>정보</u>----- ----- ----- <u>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u>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정기</p>

현 행	개 정 안
<p><u>여야 한다.</u>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u>의하여</u> 비공개 <u>행정정보로</u> 구분되는 경우에는 <u>그러하지 아니하다</u></p> <p>1. <u>당해</u> 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 운용계획</p> <p>2. ~ 7. (생 략)</p> <p>② <u>집행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u>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u>의하여</u> 비공개 <u>행정정보로</u> 구분되는 경우에는 <u>그러하지 아니하다.</u></p> <p>1. ~ 6. (생 략)</p> <p>7. 총 공사비 <u>5천만원이상의</u> 공사, <u>300만원이상의</u> 구매·용역 계약사항</p> <p>8. 제7호의 공사의 <u>설계변경시</u> 설계변경 사유 및 이로 인한 증액된 공사비</p> <p>9. <u>300만원이상</u> 물품구매와 <u>1천만원 이상</u>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사항</p> <p>10. ~ 13. (생 략)</p> <p>③ 제1항 및 제2항 <u>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의</u> 구체적인 내용 및 공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u>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u> ----- --- <u>따라</u> ----- <u>정보로</u> ----- ----- <u>그렇지 않다.</u></p> <p>1. <u>해당</u> ----- -----</p> <p>2. ~ 7. (현행과 같음)</p> <p>② <u>시장</u> ----- <u>각 호의 어느 하나에</u> --- --- <u>정보</u> ----- ----- <u>완료되었을</u> ----- ----- ----- -----  <u>따라</u> ----- <u>정보로</u> ----- ----- <u>그렇지 않다.</u></p> <p>1. ~ 6. (현행과 같음)</p> <p>7. ----- <u>5천만원 이상의</u> ---, <u>300만원 이상의</u> -----</p> <p>8. ----- <u>설계변경 시</u> ----- -----</p> <p>9. <u>300만원 이상</u> ----- <u>1천만원 이상</u> -----</p> <p>10. ~ 13. (현행과 같음)</p> <p>③ ----- <u>각 호의 어느 하나에</u> --- --- <u>정보의</u> ----- -----.</p>

현 행	개 정 안
제6조(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제도) ① <u>집행기관에</u> 신청 · 접수된 인 · 허가, 면허 등의 민원에 대하여는 그 처리상황을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제도) ① <u>시장은</u> ----- -----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 민원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 ---.
제7조(비용의 부담) <u>행정정보의</u>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u>범위안에서</u>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 복제물, 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그 부담하는 금액, 징수 절차 및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u>여수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u> 에서 정하는 바에 <u>의한다</u> .	제7조(비용의 부담) <u>정보의</u> ----- ----- <u>범위 안에서</u> ----- ----- ----- ----- <u>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u> ) ----- ----- ----- ----- 「 <u>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u> 」 ----- 따른다.
제8조(정보공개 심의회 설치) (생략)  1. <u>집행기관의 장이</u>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의 결정을 심의회에 요청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u>의한</u> 이의신청  3. 기타 <u>행정정보공개제도의</u> 운영에 관하여 <u>집행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이</u> 심의를 요청하거나 부의하는 사항	제8조(정보공개 심의회 설치) (현행과 같음)  1. <u>시장이</u> ----- ----- -----  2. ----- <u>에 따른</u> 이의신청  3. 그 밖의 정보 ----- ----- <u>시장</u> -----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과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행정지원국장, 공개대상업무 담당국·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의회 의원 2인, 학계 등 정보공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인을 두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p>	<p>제9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여수시 부시장, 정보공개업무 담당국장</li> <li>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여수시의회 의원 1명</li> <li>나. 학계 등 정보공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ul> </li> </ol> <p>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p>
<p>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생 략)</p> <p>② 시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p>	<p>제10조(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p> <p>② 여수시의회 ----- 소속공무원 중에서 -----에도 ----- 여수시의회 의원인 ----- 임기 내로 -----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p>
<p>제12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집행기관의 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p>	<p>제12조(회의) ① ----- 시장 ----- ----- ----- ---.</p>

현 행	개 정 안
<p>② (생 략)</p> <p>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u>그러하지 아니하다.</u></p> <p>제13조(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u>1인</u>을 둔다.</p> <p>② 간사는 민원지적과장이 되며 서기는 <u>민원행정담당</u>이 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 <u>그렇지 않다.</u></p> <p>제13조(간사 등) ① ----- ----- <u>1명</u> -----.</p> <p>② ----- -- <u>정보공개 업무담당 공무원</u> 중에서 <u>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u></p>
<p>제14조(의견청취 등) 심의회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구인 또는 <u>기타</u>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u>등으로부터</u>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제14조(의견청취 등) ----- ----- <u>경우에</u> ----- <u>그 밖의 이</u> ----- <u>등의</u> -- -----.</p>
<p>제15조(위원의 책무)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u>아니되며</u>,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p>	<p>제15조(위원의 책무) ----- ----- ----- <u>안되며</u>, ----- ----- .</p>
<p>제16조(회의록) ①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u>비치</u>하여야 한다.</p>	<p>제16조(회의록) ① ----- <u>작성·비치</u> ----- .</p>
<p>제1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u>각호</u>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p>제17조(위원의 해촉) ----- <u>각 호</u> ----- <u>경우</u> -----.</p>

현 행	개 정 안
<p>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p> <p>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p>	<p>1. ----- ----- 경우</p> <p>2. ----- ----- 되는 경우</p>
<p>제18조(수당 및 여비) <u>시소속</u>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u>범위안</u>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8조(수당 및 여비) <u>시 소속</u> ----- ----- <u>범위 안</u>에 서 ----- ----- .</p>
<p>제19조(<u>평가 및 보고 등</u>) ① <u>집행기관의 장</u>은 정보공개의 운영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시민의 만족도 및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한다.</p> <p>② <u>시장은 집행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실태 등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매년 발간하여 공개한다.</u></p>	<p>제19조(<u>평가 등</u>) <u>시장은</u> ----- ----- ----- ----- -----.</p> <p>② &lt;삭 제&gt;</p>
<p>제20조(다른 제도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법령 또는 <u>조례에 의하여</u>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 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u>행정정보</u>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u>아니한다</u>.</p> <p>② <u>집행기관이</u>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p>	<p>제20조(다른 제도와의 관계) ① ----- ----- <u>다른 조례에 따라</u> ----- ----- ----- <u>정보</u> ----- <u>않는다</u>.</p> <p>② <u>여수시의</u> ----- ----- -----.</p>